

# 2026년 영월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공고

영월 관내 소상공인에게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틀을 마련하고자 「2026년 영월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사업에 응모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13 일

영 월 군 수

##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6년 영월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년 1월 ~ 10월
- 지원대상 : 관내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단체
  - 영월군 1년 이상 거주 및 해당사업 영위 소상공인
- 사업규모 : 소상공인 업소 31개소 내외, 단체 3개소 내외
  - 소상공인 업소 최대 800만원 한도
  - 단체 최대 1500만원 한도(포장지 제작만 가능)
- 지원내용
  - 홍보물 및 포장지 제작 : 포장박스, 홍보지(리플릿), 상품안내서(카드로그) 등
  - 점포 경영환경 개선 : 간판교체, 소규모 리모델링, 상품배열개선 등
  - 안전위생 지원 : CCTV설치, 소독기, 살균기, 업소용 식기세척기 등
  - 스마트화 지원 : POS기,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 환경위생과(위생팀) 「음식점 입식좌석 전환 지원사업 중복 신청 불가」

○ 지원분야별 상세내역

- 사업 자부담 : 부가세를 제외한 사업비의 20% 이상
- 지원 한도액 : 부가세를 제외한 사업비의 80% 이내 최대 800만원
- 지원분야 및 내용

지원분야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최대)
홍보지원	- 포장지 지원(박스, 포장용기 등) ※ 환경 친화적 포장재 이용 - 상품안내서 등의 상품홍보물 제작	→ 50만원 → 100만원
내외부 환경개선 (대규모 수선 불가)	- 옥외간판 교체 ※ 선팅 제외 - 인테리어 개선 : (외부)도색, (내부)도배, 지붕, 차양막(어닝) 설치, 조명, 가벽 설치, 바닥 교체 등 - 화장실 개선 : 판매시설과 동일한 실내 공간 위치 시 지원 - 입식 테이블 세트 - 기타 출입문, 에어컨, 환풍기 등 환경개선	800만원
상품배열 개선	- 진열대, 진열소도구, 쇼케이스 구입 등 ※ 주요상품의 전시판매가 가능한 제품(일반적인 수납선반 및 진열장 등은 불가)	300만원
안전위생 설비	- CCTV, 소독기, 살균기, 업소용 식기세척기 등 ※ 프로그램만 지원 불가	300만원
스마트화 지원	- 키오스크(스탠딩 또는 테이블형 등) - POS 기기, 테이블오더 ※ 프로그램만 지원 불가	500만원

※ 유의사항

- 지원 한도(최대 800만원) 내에서 복수 선택 가능
- 옥외간판 교체(신고 또는 허가대상 광고물은 신고(허가) 관련 서류 필수 제출-미제출시 지원금 지급불가)
- 지원금 한도 초과분, 부가세 등은 자부담

○ 지원업소별 상세내역

- 음식업소

건물외관	외벽 도색, 간판, 환기시설 등
조리장	개방형 조리장, 바닥 타일 교체, 기타 내부수리 등
영업장	입식형 식탁으로 교체, 내부 시설 개선 등
화장실	남녀 구분, 세면기 교체 등

- 이미용업소

건물외관	외벽 도색, 간판, 환기시설 등
영업시설	세면대, 미용의자, 전기온수기 물품 외 내부 시설 개선 등

- 기타업소

건물외관	외벽 도색, 간판 등
내부시설	내부 수리 / 진열장, 수납장 제작 등 사무실, 판매장 등 영업시설만 가능 / 생활·주거용 공간, 창고 불가

- 기타 사항

- \* 물품구입 : 업소용 가스레인지, 냉장고, 냉동고, 냉난방기 및 주업종과 관련된 기기 교체 외 불가
- \* 건축물 대수선(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및 주계단 등 증설, 해체, 변경 및 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불가
- \* 신고 된 영업장 면적 외 지원 불가

## 2. 신청대상

○ 소상공인(개별사업장)

- ① 영월군에 최근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해당 사업을 영월군에서 (사업장소재지)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소상공인(대표자) 중 100대 생활업종\*중 접객밀접업종 \* 100대 생활업종 기준 :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기준(<https://tasis.nts.go.kr>)

### 소상공인 범위(기준)

-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 10인 미만 / 그 밖의 업종 : 5명 미만
- \*평균매출액(3년) 10억원~120억원 이하(업종별상이)인 기업[붙임 3 참고]

### ② 선정 우선순위(붙임4 선정기준)

- ❖ 사업장의 매출액과 점포면적이 적은 소상공인
- ❖ 관내 거주기간 및 해당사업 운영기간이 오래된 소상공인
- ❖ 모범업소(착한가격업소 등)로 인정(지정)된 소상공인 또는 청년 소상공인
- ❖ 생활밀접형 업종 중接客 밀접업종

### ○ 소상공인 단체 (포장지 제작 지원)

#### ① 영월군에 최근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해당사업을 1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

- 유효회원수 : 주민등록 1년이상 & 해당사업 1년이상 계속하여 영위 & 100대 생활업종 중接客밀접업종
- 회원수 5인 이상 단체
- 개별사업장 신청과 단체 중복신청 불가

예시)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중 포장지 지원의 개별사업장과 단체 → 중복신청불가  
단, 중복신청 했을 경우 단체에서 해당회원수 제외

## 3. 사업자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 1) 선정방법

- 선정기준 따른 점수표 고득점자 선정
- 보조금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

### 2) 선정기준

- 사업장의 연간 매출액과 점포면적이 적은 소상공인
- 관내 거주기간 및 해당사업 운영기간이 오래된 소상공인
- 모범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인정된 소상공인 또는 청년 소상공인

(청년 : 19세이상 ~ 45세이하)

- 생활밀접형 업종 중接客밀접업종
- 차상위계층

#### 4. 지원 제외 대상자

- 관계 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자
- 영업주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군에 있지 아니한 자
-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 신청한 자
- 유흥, 사치, 불법도박, 향락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및 100대 생활업종 중 제외 업종【붙임 2】 참고
- 휴·폐업 중이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자
-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와 영업주가 다른 경우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와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 유사 중복으로 영월군에서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을 계획이 있는 사업자. 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지원받을 경우 사업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지원가능
- 「영월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용자」 원리금 상환 연체 및 불이행자
- 그 외 군수가 제한하는 항목(건축물 대수선, 소모품 등)과 업종(도박 및 게임업종, 건전문화 위해업종 등)

#### 5.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6. 1. 26.\(월\) ~ 2. 13.\(금\) 18:00](#)

○ 접수처 : [영월군청 경제과\(3층\) 방문 제출](#)

○ 제출서류 (첨부파일 서식 참고)

1. (개별사업장)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선 대상 외부 및 내부 사진 포함  
(단체) 지원신청서 및 개별업체 현황
2.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포함), 가족관계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5년)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6. 국세 및 지방세납세(완납)증명서
7. 상시근로자수 확인가능 서류
  - 1인)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다인)4대보험사업장가입내역확인서
- 8 시설에 관한 권리 확인가능서류
  - 자가점포 :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 임대점포 :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및 건물주의 시설개선 동의서
9. 차상위계층 등 증명 서류(해당자)
10. 총사업비 산출근거 - 견적서 등 (\*산출내역/부가세 표시)

## 6. 사업 추진 계획 ※ 상기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모집공고 및 접수 : 2월 13일 까지
- 대상자 선정 및 심의 : 3월 중
- 대상자 결정 통지 : 4월 중 (개별 통지)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통지 : 4월 ~ 5월 중
- 사업시행 및 정산 : 5월 ~ 10월

## 7. 사업신청 시 유의사항

- 총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일 것
- 부가가치세는 보조사업자(소상공인)가 부담
- 자부담이 20% 이상 포함된 사업금액일 것
- 사업 추진계획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 제출

## 8. 지원조건 및 영업자 준수사항

- 보조사업 완료 후 3년간 해당사업을 유지해야하며, 그 전에 폐업 또는 양도 할 시 보조금 환수조치
- 아래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모든 법적책임은 지원 사업 대상자에게 있으며 지원 사업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사업에 신청한 경우
- 지원 사업 추진 조건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 자부담 이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경우
-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교부 목적 외 의 용도로 사용 불가하며, 1년 이상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처분 불가합니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관리대장을 작성 및 관리하여 합니다.
- 건축 인허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건축 인허가(군청 신속허가처리과)를 사전에 득한 후 시공해야 합니다.(인허가사항 미확인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간판개선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 연장)허가(군청 도시과 경관팀)를 득하여야 합니다.(인허가사항 미확인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기타 신고,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행정절차를 이행 후 사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기타 사업 관련 문의 : 경제과 지역경제팀(370-2754)

**붙임1**

**100대 생활업종 영월군 현황(지원대상 및 제외업종)**

지 원 대 상						지 원 제외대상		
연번	업종	사업체수	연번	업종	사업체수	연번	업종	사업체수
1	한식음식점	587	35	제과점	18	1	약국	17
2	커피음료점	58	36	간판광고물업	11	2	여행사	12
3	분식점	45	37	구내식당	10	3	법무사	7
4	패스트푸드점	34	38	노래방	11	4	건축사	7
5	중식음식점	27	39	스포츠교육기관	11	5	치과의원	7
6	기타음식점	18	40	생선가게	8	6	세무사	6
7	기타외국식음식점	11	41	호프주점	9	7	내과·소아과의원	6
8	일식음식점	7	42	문구점	8	8	한방병원·한의원	5
9	펜션·게스트하우스	240	43	침구·커튼가게	8	9	변호사	5
10	여관·모텔	30	44	기술·직업훈련학원	13	10	종합병원	4
11	세탁소	20	45	가구점	5	11	일반외과의원	3
12	피부관리업	16	46	휴대폰가게	6	12	감정평가사	-
13	식료품가게	155	47	사진촬영업	8	13	공인노무사	-
14	채소가게	88	48	가전제품판매점	6	14	동물병원	-
15	미용실	69	49	신발가게	5	15	안과의원	-
16	옷가게	52	50	애완용품점	6	16	부동산중개업	40
17	자동차수리점	44	51	건어물가게	4	17	담배·복권소매업	26
18	정육점	35	52	컴퓨터판매점	5	18	LPG 충전소	4
19	당구장	39	53	독서실	-	19	주유소	25
20	편의점	38	54	목욕탕	5	20	실외골프연습장	-
21	슈퍼마켓	25	55	실내스크린골프점	6	21	통신판매업	168
22	교습학원	24	56	헬스클럽	9			
23	교습소·공부방	27	57	시계·귀금속점	3			
24	실내장식가게	30	58	스포츠시설운영업	5			
25	이발소	22	59	안경점	3			
26	꽃가게	23	60	의료용품가게	3			
27	곡물가게	25	61	자전거판매점	-			
28	과일가게	15	62	서점	-			
29	건강보조식품가게	20	63	이륜자동차판매점	-			
30	스포츠용품점	20	64	장난감가게	4			
31	화장품가게	17	65	중고차판매점	-			
32	철물점	10	66	pc방	-			
33	가전제품수리점	16	67	예식장	-			
34	예술학원	12	68	주차장운영업	-			

※ 영월군 현황 : 89종 2,431개소(국세청 국세통계포털 / '24.10.기준)

- 지원대상 : 68종, 제외대상 : 21종

## 붙임2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중소벤처기업부)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증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증개업
46209 중	앞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21 중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증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희주점업
56212	무도유희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증개업, 게임 아바타 증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폴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안마원 규모(300M <sup>2</sup>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준용

### 붙임3

### 소상공인 범위(매출액 기준)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33.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 비고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 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붙임4

## 지원대상 선정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 점				
평가기준			매우 탁월	탁월	우수	보통	미흡
경영현황 (100점)	거주 기간	관내 거주기간	20	16	12	8	4
			15년 이상	10년 미만~ 15년 이상	5년 미만~ 10년 이상	1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연매출 기준	점포 연매출 기준	30	24	18	12	6
			3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업력 현황	사업영위기간	20	16	12	8	4
			12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이상
	시설 현황	점포 면적	20	16	12	8	4
			33㎡ 이하	99㎡ 이하	165㎡ 이하	231㎡ 이하	232㎡ 이상
점포 형태		10			5		
	임차			자가			
가산점	붙임1) 생활 밀접형 업종 중 연번 1~10번에 해당할 경우		5점				
	차상위 계층 이하		5점				
	모범사업자 등		5점				
	청년 소상공인		5점				
	군 정책사업 참여 업체 (ex. 작은학교)		5점				
	착한가격업소 대상		5점				
합계	110	※ 합계 점수 순으로 선정 , 가산점은 최대 10점 인정					